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u>제16조 제1항 각 호의</u>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5. ~ 7. (생략)</p> <p>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u>제16조제1항의</u>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제2호</u> 에 따른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5. ~ 7. (현행과 같음)</p> <p>8. ----- <u>제2</u> <u>호에</u> 따른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 인용조문 수정</p> <p>○ 인용조문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9. ~ 16. (생략)	9. ~ 16. (현행과 같음)	
<p>제10조(우범우편물 선별) ① <u>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우편물로 선별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10조(우범우편물 선별) <u>세관장은</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 하위번호(행)이 하나만 존재하므로 항번호 삭제</p>
<p>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u>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p> <p>2. <u>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u></p>	<p>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u>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u></p> <p>&lt;삭제&gt;</p> <p>&lt;삭제&gt;</p>	<p>○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규정(현행 제6호와 동일)</p> <p>○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규정한 부분 삭제</p> <p>○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규정한 부분</p>

현행	개정안	비고
3. <u>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u>	<삭제>	삭제(현행 제2호~제5호)
4. <u>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u>	<삭제>	
5. <u>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u>	<삭제>	
6. <u>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u>	<삭제>	
7. <u>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u>	<삭제>	○ 제2항제1호로 이동
8. <u>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u>	<삭제>	○ 제2항제2호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p> <p>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p>	<p>○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규정</p> <p>○ 현행 제7호 내용과 동일</p> <p>○ 현행 제8호 내용과 동일</p>
<p>②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 항 번호 변경</p>
<p>제26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8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p>	<p>제26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 ----- ----- 제16조제2항제2호-----</p>	<p>○ 인용조문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u>고시 및 훈령</u>을 준용한다.</p>	<p>제35조(준용규정) ----- ----- <u>고시</u>를 ----- -----.</p>	<p>○ 하위 호에 규정된 훈령 삭제에 따라 훈령 준용 부분 수정</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p>	<p>&lt;삭제&gt;</p>	<p>○ 해당 훈령은 비공개 훈령으로 대국민 공개인 이 고시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 삭제</p>
<p>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p>	<p>4. ----- ----- -----</p>	<p>○ 4호 삭제에 따른 호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6.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 -----	○ 4호 삭제에 따른 호 번호 변경
7.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6. -----	○ 4호 삭제에 따른 호 번호 변경
8.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7. -----	○ 4호 삭제에 따른 호 번호 변경
9.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8. ----- -----	○ 4호 삭제에 따른 호 번호 변경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 ----- 2024년 ----- - 매 3년----- ----- -----.	○ 재검토기한 변경
<신설>	<u>부칙(관세청 고시 제2023-63호, 2023. 12.12)</u> <u>이 고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u>	

# 현행

##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입출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품명	도착일자

2. 우편물 보관기간(통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 내에 아래 통관방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신청 하시거나 바깥입니다(보관기간 경과 시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반송 될 수 있음).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물품	대상물품
통관방법	통관방법

(참고)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물품(50달러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등 부과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해외로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간이통관 신청서로 반송 신청할 수 있음

모바일/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간편접속) → 우편물통관 → 개인인증 → 신청</li> <li>(PC) 전자통관시스템(<a href="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a>)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신청</li> </ul>
우편/FAX/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방법)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명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 ○○광역시 ○○구 ○○로 ○○번길 ○○○○세관 ○○○○과</li> <li>(FAX) 000-000-0000, -(E-Mail) ○○○○@korea.kr</li> </ul> </li> </ul>

3. 주요 물품 통관 안내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구분	통관가능(개인 자가사용물품)	통관제한(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약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사용 인정기준: 6명(의약품은 8명) 초과시 3개월 복용 분량 - 6명 초과시: 6명만 통관, 나머지는 반송</li> <li>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시 해당수량 통관가능</li> <li>※ 판매용: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 수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의약품)에서 수입금지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유해성분 문의: 식품안전관리원 종합상담센터 1577-1234)</li> <li>※ 6명 이내라도 수입금지 유해성분 함유시 통관제한 (타다라벌, 실데나필, HORNY GOAT WEED, 요양탄 등)</li> </ul>
모의총포·조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청(총포화약안전기술원 등)에 모의총포등 해당여부 검사(※검사수수료 수취인 부담)</li> <li>※ 모의총포는 수입이 금지되며, 총포류의 경우 지방경찰청장 허가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명 이내라도 수입금지 유해성분 함유시 통관제한 (타다라벌, 실데나필, HORNY GOAT WEED, 요양탄 등)</li> <li>※ 판매용: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 수입신고</li> </ul>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은 권리권자들의 감정결과(진정상품 해당여부)에 따라 처리(별도 양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로 안내 됨)

4. 관련기관 연락처

통관(세관)	고객지원센터: 125	검역	동물: 000-000-0000	우편물 도착·보관·배출	우편 고객만족센터: 1588-0000
우편서비스	문의: 000-000-0000	검역	식물: 000-000-0000	통관우체국	000-000-0000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유의사항) 식물검역 중요 전 검역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검역에 협력된 시도에 한하여 사용 진행 인수 가능합니다.

○○○○세관장

# 개정안

## 단.

##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입출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품명	도착일자

2. 우편물 보관기간(통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 내에 아래 통관방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신청 하시거나 바깥입니다(보관기간 경과 시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반송 될 수 있음).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물품	대상물품
통관방법	통관방법

(참고)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물품(50달러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등 부과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해외로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간이통관 신청서로 반송 신청할 수 있음

모바일/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간편접속) → 우편물통관 → 개인인증 → 신청</li> <li>(PC) 전자통관시스템(<a href="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a>)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신청</li> </ul>
우편/FAX/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방법)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명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 ○○광역시 ○○구 ○○로 ○○번길 ○○○○세관 ○○○○과</li> <li>(FAX) 000-000-0000, -(E-Mail) ○○○○@korea.kr</li> </ul> </li> </ul>

3. 주요 물품 통관 안내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구분	통관가능(개인 자가사용물품)	통관제한(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약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사용 인정기준: 6명(의약품은 8명) 초과시 3개월 복용 분량 - 요건부족 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제외</li> <li>- 6명 초과시: 6명만 통관, 나머지는 반송</li> <li>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시 해당수량 통관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의약품)에서 수입금지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유해성분 문의: 식품안전관리원 종합상담센터 1577-1234)</li> <li>※ 6명 이내라도 수입금지 유해성분 함유시 통관제한 (타다라벌, 실데나필, HORNY GOAT WEED, 요양탄 등)</li> <li>※ 판매용: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 수입신고</li> </ul>
모의총포·조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청(총포화약안전기술원 등)에 모의총포등 해당여부 검사(※검사수수료 수취인 부담)</li> <li>※ 모의총포는 수입이 금지되며, 총포류의 경우 지방경찰청장 허가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명 이내라도 수입금지 유해성분 함유시 통관제한 (타다라벌, 실데나필, HORNY GOAT WEED, 요양탄 등)</li> <li>※ 판매용: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 수입신고</li> </ul>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은 권리권자들의 감정결과(진정상품 해당여부)에 따라 처리(별도 양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로 안내 됨)

4. 관련기관 연락처

통관(세관)	고객지원센터: 125	검역	동물: 000-000-0000	우편물 도착·보관·배출	우편 고객만족센터: 1588-0000
우편서비스	문의: 000-000-0000	검역	식물: 000-000-0000	통관우체국	000-000-0000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유의사항) 식물검역 중요 전 검역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검역에 협력된 시도에 한하여 사용 진행 인수 가능합니다.

○○○○세관장

# 비고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 현행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반송 또는 폐기 절차가 필요하여 0000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통관번호 보내는사람	우편물번호 받는사람	발송국 품명	중량(g) 도착일자
---------------	---------------	-----------	---------------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할 수 없으며, 귀하의 우편물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판단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관]** 우편물 보관기간(통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내에 0000세관에 통관신청 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분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우편물 통관방법을 참고하여 기한내 통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①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또는 폐기 신청 • 가짜상품일 경우 수입 통관불허 - 「간이통관신청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반송 -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여 세관에 제출 • 가짜상품을 반박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통관신청(진정상품일 경우) • 진정상품일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증명자료 첨부 하여 간이통관신청 • 판매용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함
--	--

### [우편물 통관방법]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대상물품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통관방법 •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모바일 인터넷 등) * 현장과세통관 대상 물품은 간이통관 신청절차 없이 세관에서 즉시 부과고지 * 신청서 접수후 필요한 경우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물품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은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통관방법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중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rcoa.or.kr) 참조
--	---

###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모바일/인터넷	• (스마트폰)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 간편접속) → 우편물통관 → 개인인증 → 신청 • (PC)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신청
우편/FAX/E-Mail	• (제출방법)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빙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우편) 000광역시 000구 000로 000번길 000000세관 00000과 -(FAX) 000-000-0000, -(E-Mail) 00000@korea.kr * (유의사항)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송·폐기 신청 방법)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폐기” 신청란에 체크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3. 관련기관 연락처

통관(세관)	고객지원센터: 125 우편세관: 000-000-0000	우편물 도착·보관·배출(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통관우체국: 000-000-0000
--------	-----------------------------------	-------------------	--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00000@korea.kr)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000세관장

# 개정안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반송 또는 폐기 절차가 필요하여 0000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통관번호 보내는사람	우편물번호 받는사람	발송국 품명	중량(g) 도착일자
---------------	---------------	-----------	---------------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할 수 없으며, 귀하의 우편물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판단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관]** 우편물 보관기간(통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내에 0000세관에 통관신청 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분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우편물 통관방법을 참고하여 기한내 통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①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또는 폐기 신청 • 가짜상품일 경우 수입 통관불허 - 「간이통관신청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반송 -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여 세관에 제출 • 가짜상품을 반박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통관신청(진정상품일 경우) • 진정상품일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증명자료 첨부 하여 간이통관신청 • 판매용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함
--	--

### [우편물 통관방법]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대상물품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통관방법 •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모바일 인터넷 등) * 현장과세통관 대상 물품은 간이통관 신청절차 없이 세관에서 즉시 부과고지 * 신청서 접수후 필요한 경우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물품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은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통관방법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중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rcoa.or.kr) 참조
--	---

###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모바일/인터넷	• (스마트폰)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 간편접속) → 우편물통관 → 개인인증 → 신청 • (PC)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신청
우편/FAX/E-Mail	• (제출방법)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빙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우편) 000광역시 000구 000로 000번길 000000세관 00000과 -(FAX) 000-000-0000, -(E-Mail) 00000@korea.kr * (유의사항)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송·폐기 신청 방법)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폐기” 신청란에 체크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3. 관련기관 연락처

통관(세관)	고객지원센터: 125 (24시간 콜센터 및 구청내) 우편세관: 000-000-0000 (통관신청사)	우편물 도착·보관·배출(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통관우체국: 000-000-0000
--------	--	-------------------	--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00000@korea.kr)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000세관장

# 비고